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

◇ 제 · 개정 이유

평가반 구성의 경직성, 평가결과 통보 전 결과의 노출, 평가 단위와 등급 부여 단위의 차이, 소명 기회의 부재 등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결과 확인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- 가. 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원칙 및 평가반 구성 체계 변경 (안 제3조제2항, 제4조)
- 나. 평가단위와 안전등급 간 불일치 해소 (안 제5조제2항)
- 다. 평가 결과 조치 방법의 개선 (안 제6조, 제7조제1항)
- 라. 해당 고시(「예방규정 이행실태 평가 등에 관한 규정」)에 대한 재검토 기한 신설 (안 제9조)
- 마. 이행실태 평가항목별로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항목과 배점 조정 (안 별표)
- 바. 서식 문구 등 개선(별지서식 1, 3, 4)
- 사. 불필요한 서식 삭제(별지서식 2)